

제17회 코리아패션대상 유공자 포상 공고

패션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, 포상함으로써 관련 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의욕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. 포상의 종류 및 대상

포 상 종 류	인 원	대 상
○ 대통령 표창	○ 명	○ 패션기업 대표자 부문
○ 국무총리 표창	○ 명	○ 패션기업 종사자 부문
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	○ 명	○ 연관산업 종사자 부문
○ 한국패션산업협회장 표창	○ 명	

※ 수공기간 : 해당분야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, 패션산업협회장 표창은 2년 이상의 공적 필수

2. 포상대상 및 자격요건

(1) 패션기업 대표자 부문

-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및 뛰어난 경영 능력을 통해 한국패션산업 발전 및 한국패션시장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패션 기업 대표자

(2) 패션기업 종사자 부문

- 한국패션산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경영 기획, 상품기획, 디자인, 마케팅, 생산 등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속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패션기업 종사자

(3) 연관산업 종사자 부문

- 패션테크(IT), 유통, 미디어, 연출, 교육, 제조 등 패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연관산업 종사자

신청인은 아래 포상 추천 제한 사항을 사전에 상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포상신청 제한

- (1) 재포상 금지 :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* 기준일 : 수여일부터 추천일
 -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 될 수 있음
 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 될 수 있음
- (2) 추천제한
 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형사처분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○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-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- 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 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(수시 취소)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○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 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-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또는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4. 신청방법

- 포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5항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패션산업협회로 신청하여야 한다.

5. 구비서류 (부문별 신청 서류 상이)

신청부문	제출서류	비고
패션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 부문	① 포상신청서(대표자 부문 또는 종사자 부문) 1부.	별첨호 또는 2호
	② 신청인현황조사서 1부.	별지 1호 서식
	③ 공적요약서 1부.	별지 2호 서식
	④ 이력서 1부.	별지 3호 서식
	⑤ 정부포상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.	별지 4호 서식
	⑥ 장관표창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.	별지 5호 서식
	⑦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.	-
	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	-
	⑨ '22년, '23년 각 재무제표 1부.	-
	⑩ '22년, '23년 각 수출 및 고용 관련 증빙서	-
연관산업 종사자 부문	① 포상신청서(연관산업 종사자 부문) 1부.	별첨 3호 서식
	② 신청인현황조사서 1부.	별지 1호 서식
	③ 공적요약서 1부.	별지 2호 서식
	④ 이력서 1부.	별지 3호 서식
	⑤ 정부포상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.	별지 4호 서식
	⑥ 장관표창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.	별지 5호 서식
	⑦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.	-
	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	-
	⑨ '22년 '23년 재무제표 및 고용관련 증빙서 각 1부.	-
	⑩ 실적(협업, 개발, 수상 등) 관련 증빙자료	-

* 수출 관련 증빙 : 통관수출(한국무역협회 확인서), 기타수출(외국환은행 증명서) 中 택1

* 고용 관련 증빙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고용상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 中 택1

※ 심사 사항에 대한 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실적 인정

6. 제출처

- 우편발송 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16층(한국패션산업협회 김대완 과장)
- 이메일 : twkim@koreafashion.org
- ※ 구비서류는 **원본 우편발송**이 원칙이며, **이메일(twkim@koreafashion.org)**로도 반드시 송부 (hwp 원본 파일 포함)

7. 신청기한 : 2024년 4월 30일(화), 17시까지 [도착분에 한함]

8. 심사방법

(1) 기본원칙

- 해당분야에서 대통령·총리표창은 5년 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, 패션산업협회장표창은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
-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“중복수여의금지”,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“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포상 제한” 및 “정부포상업무지침”, “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” 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

(2) 심사단계

-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한국패션산업협회의 포상심사위원회,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,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

(3) 심사기준

- 산업특성지표 : 공적기간, 산업기여도 및 대상부문 실적(고용, 매출, 수출 등)
- 정부공통지표 : 국가발전기여도, 국민생활향상도, 고객만족도, 창조적기여도

※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(행정안전부)” 또는 “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” 에 의한다.

※ 포상 훈격 결정 후 철회 불가: 타 기관의 정부포상 중복 신청시 반드시 사전 공유

9. 시상일시(예정) : 2024년 12월 4일(수), 15:00 ~ 16:00

※ 수상자는 별도 안내 예정

10. 시상장소(예정) : 섬유센터 3층

※ 문의처 : 한국패션산업협회 김태완 과장(02-528-0114, twkim@koreafashion.org)

○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섬유센터빌딩 16층 사업2부

○ 포상 신청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, 대한민국 상훈,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 (www.koreafashion.org)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